

사업장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사업장 규모	제1종사업장 (단위: m ³ /일)					제2종 사업장	제3종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0,000 이상	8,000 이상	6,000 이상	4,000 이상	2,000 이상			
	미만	10,000 미만	8,000 미만	6,000 미만	4,000 미만			
부과 계수	1.8	1.7	1.6	1.5	1.4	1.3	1.2	1.1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부과계수는 폐수배출량에 따라 적용한다.